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 도 참 고 자 료

담당부서	조정부		배 포 일	3월 9일 / (총 3 매)	
조정위원	이희석	02-6210-0314	배 포 부서	유선경 팀장	02-6210-0160
심사관	장학민	02-6210-0330	교육연구팀	박은혜	02-6210-0162

의료중재원을 통한 ‘형사고소 취하’ 사례 늘어

- 환자, 조정을 통해 사건의 신속 해결 -
- 의사, 수사기관 출석에 따른 시간 손실·심리적 부담 줄어 -

<사 례 요 약>

<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받은 당뇨환자가 오른쪽 눈 실명에 대한 의료과실이 없음을 이해하고 형사고소를 취하 사례>

당뇨병력이 있는 장씨(60세,남)는 2014. 7. 우안에 외상을 입고 A병원에서 외상 이후 높아진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안압강하제를 처방받음.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통증완화를 위해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받은 뒤 실명함.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장씨의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 및 주사요법을 실시한 것과, 안통 완화를 위해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즉 장씨의 우안 실명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의 당뇨병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한 것임.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이해하고, 진료소견서를 받기로 한 후 형사고소를 취하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례를 소개했다.

○ 당뇨를 앓던 환자가 화장실 문에 부딪혀 오른쪽 눈에 외상을 입고 약물치료를 했으나, 눈의 통증 및 시력저하가 호전되지 않아 신생혈관녹내장진단을 받고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받은 후 실명했다.

-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당시 이 환자는 병원 수술 이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데 대한 충격으로 의료인을 형사고소한 상황이었다.

- 의료중재원 감정결과 환자는 사고이전에 이미 양안 당뇨병성 망막 병증 및 백내장,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았고, 외상후 시력 상실이 확인된 상태이었다. 병원에서 실시한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은 안압상승으로 인한 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 역시 안압저하 수술임을 알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가진 기왕증에 기인한 시신경 손상이 실명의 원인인 것으로 감정했다.
- 그러나, 환자측은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에 의료중재원 조정부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병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쳐, 의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 시키고, 상세한 실명 경위가 기재된 진료소견서를 의료인이 환자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합의, 분쟁을 종결하였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위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환자와 의료인의 극한 갈등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고소가 취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며,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의료인은 형사 고소로 인한 시간 손실 및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진료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붙임> 형사고소 취하사례 3건

<붙임> 형사고소 취하사례 3건

사례1 땀 치료 화상에 따른 형사 고소후 취하 사례

이씨(17세,남)는 2013. 7. A병원에서 항문열구 진단을 받고, 허리부위에 침 및 땀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시 화상을 입어 병원 측이 화상 연고를 발라줌. 10월 초까지 계속 치료받던 이씨는 B피부과 병원에서 2도 화상의 진단을 받고 땀을 놓은 A병원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의료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항문부위 증세에 대해 허리부근 기해수혈에 온침요법(침과 땀 치료를 병행)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화상의 발생 위치, 흉터 등을 고려하여 병원이 화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가 뜨겁다고 느끼면 이야기 하도록 설명하여 열 자극을 조절해 나가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시술상의 과실로 판단하였으며, 물집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부과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의 치료비 면제 및 위자료 지급(50만원)에 상호 합의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

사례2 재활 치료시 발생한 골절상으로 형사 고소후 취하 사례

뇌출혈 및 뇌경색, 혈관성 치매 병력을 가진 박씨(69세,남)는 2014. 6. 뇌경색으로 인한 중박마비 증상에 대해 재활치료를 받기위해 A병원에 입원함. 6월 말 다리를 구부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강직된 관절에 대하여 재활치료(허리를 다리쪽으로 숙이게 하는 치료로, 스스로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사가 강제로 누름)를 받던 중 고관절 부위에서 똑 하는 소리가 난 후 통증과 붓기가 발생함.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이었고 다른 병원에 전원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음.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뇌병변으로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했던 사지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시에는 임상적으로 근력저하를 동반한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물리치료 도중 무리한 힘을 가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는 손해배상금(6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

사례3 피부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흉터로 형사 고소후 취하 사례

김씨(49세,여)는 얼굴 광대뼈 부위의 발적, 가려움 등의 증세로 2013. 5. A 정형외과 의원에서 연고와 경구약을 처방받아 치료하던 중 이틀 후 피부 변색이 발생한 것을 보고 병원에 재 방문, 의사가 해당 부위의 피부를 긁어내었고 통증을 느낌. 이후 물집은 없어졌으나 표피가 검게 변해, 전문 피부과를 방문하여 감염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아 총 11회의 처치를 받았으나 함몰 흉터가 계속 남아있고 향후에도 10회 정도의 흉터 시술을 필요로 함.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환자의 증세를 일반 습진으로만 진단해 재발성 단순포진일 가능성을 놓쳤다고 판단하였고, 피부색의 변화는 수포성 발진을 터지지 않게 유지하며 소독하지 못해 발생한 피부염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색소침소이며, 함몰흉터는 딱지가 생긴 후 이에 대한 관리치료(딱지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전문치료)가 부실하여 2차 감염으로 발생하였다고 봄. 또한 이같은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피부과 전문의에게 어려운 사안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정형외과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함.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와 병원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치료비 및 위자료(500만원)지급을 합의하고, 환자는 형사고소를 취하.